

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53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3.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27. 강남구청장(세무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13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정찬식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사업내용
 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
- 출연예산 : 72,551천원
- 산출기초
 - 2022년도 보통세 604,589,900천원의 1만분의 1.2

다. 참고사항
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,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,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및 제152조¹⁾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데 필요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출연금 산출내역은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04,589,900천원의 1만분의 1.2(0.012%)인 72,551천원임.

☞ 2022년 결산기준 보통세 604,590백만원

- 재산세 490,634백만원 / 등록면허세 104,122백만원 / 지방소비세 5,373백만원
/ 지난연도 4,461백만원

-
- 1) 「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9.>
- 「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「령」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1. 1만분의 1.2
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 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 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○ 최근 5년간 강남구 출연금은 증가 추세에 있음

(단위:천원)

년 도	2020	2021	2022	2023	2024
금 액	54,740	53,541	56,836	66,668	72,551

○ 강남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여 얻은 행정적 혜택은 다음과 같음.

- 지방세 교육 : 총 287명 교육 ('18년 ~ '23년 9월)
-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

(단위 : 건)

구 분	합 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.9
전국	2,134	43	120	279	276	256	258	902
서울	170	10	16	23	36	37	29	19
강남구	4	1	-	-	1	1	-	1

- 지방세 법령정보DB구축 등 주요법령 정보 제공
- 지방세 전문 소식지 「지방세 알림e」 발간
- 연구과제 수행 : 총 1,132건 (2011년 ~ 2023년 8월) ※'23년 84건 수행중
- 최근 강남구 의뢰 수행 연구과제

연번	의뢰내역			채택결과	
	연 도	기 관	연구과제 (제목)	연구보고서 (제목)	연구번호
-	2021	서울 강남구	구세감면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검토 및 내·외부 영향	구세감면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검토 및 내·외부 영향	수시과제 21-06

○ 본 동의안은 법정의무경비 성격으로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해야 하는 사안이나, 강남구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를 감안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. 끝.

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5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 27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세무관리과

1. 제안이유

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출연금 내역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근거(사유) :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다. 사업내용
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

라. 출연예산 : 72,551천원

마. 산출기초

2022년도 보통세 604,589,900천원의 1만분의 1.2

3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가.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

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(이하 생략)

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(중략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나.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 1. 1만분의 1.2(중략)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(중략)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